

전기차가상 엔진음 장치 '확성기'로 품목분류... 'WTO 양허세율 0%'

[이주의 초점]

202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친환경차 신종 부품 품목분류 기준 제시 (4p)

[오피니언]

"HS CODE만 확인하면 통관·생산 리스크 우려"
베트남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편 (13p)

[통상 현안 체크]

미, 한국 포함 16개 교역국 대상 301조 조사 착수...
추가 관세 여부에 주목 (11p)

[위클리 뉴스]

WCO, "옥외광고용 LED 디스플레이 모듈, 완제품
아닌 중간재" 무관세 확정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속도 낸다" 한미전략적투자
특별법 국회 통과
해수부, 요트 수입 시 임시항해검사 원격으로 전환 (7p)

[판례 동향]

「관세법」상 생산지원비에 관한 판례 해설 (19p)

[품목분류 동향]

제8414호 품목분류 해설 및 주요 쟁점사항과
소호 분류체계 문제점 (26p)



※ Chat GPT 생성 이미지

발행인 백형민

편집인 남성훈

총괄 김민정

취재 김성은 ray1023@kctdi.or.kr

서준식 sjs1216@kctdi.or.kr

마케팅 김진우 kjw@kctdi.or.kr

디자인 경성문화사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6년 3월 16일(통권 제2170호)

I S S N 2799-7251

e-ISSN 2799-726X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kctdi.or.kr

S N S blog.naver.com/kctdi1964

www.instagram.com/kctdi_library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 04** 전기차 가상 엔진음 장치 '확성기' 분류...
'WTO 양허세율 0%'

관세행정실무해설

- 17** 질의응답사례
검역 불합격

07 Weekly News

판례동향

- 19** 관세판례해설
「관세법」상 생산지원비에 관한 판례 해설

통상 현안 체크

- 11** 미, 한국 포함 16개 교역국 대상 301조 조사
착수... 추가 관세 여부에 주목

품목분류동향

- 26** 품목분류해설
제8414호 품목분류 해설 및 주요 쟁점사항 연구

오피니언

- 13** 시선, 베트남 통관
이 여 람 KOTRA 하노이 무역관 FTA
활용센터(관세사)
베트남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편 이후
수입 동향과 사례 분석

- 45** 세번 바로잡기
차세대 반도체 소재 '탄화규소'
-

전기차 가상 엔진음 장치 ‘확성기’ 분류… ‘WTO 양허세율 0%’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친환경차 신종 부품 품목분류 기준 제시

관세청이 전기차용 가상 엔진음 재생장치를 ‘확성기’로 분류해 무관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최근 친환경 자동차 확산으로 등장한 신종 차량부품의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의 관심이 모인다.

지난 1월 29일 열린 202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가 결정됐다. 이를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은 3월 4일 관보에 게재됐다.

■ 전기차 가상 엔진음 장치 ‘확성기(제8518.29-9000호)’ 분류

이번 결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사안은 친환경 차량용 가상 엔진음 재생장치의 품목분류다.

위원회는 전기차 앞 범퍼나 하이브리드 차량 내부에 장착돼 가상의 주행음이나 시스템 안내음을 재생하는 차량용 음향기기 두 가지를 기존의 차량용 음향 신호용 기구(HS 제8512.30-0000호)가 아닌 확성기(HS 제8518.29-9000호)로 결정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해당 장치의 구조와 작동 원리가 판단 기준이 됐다. 위원회는 해당 물품이 특정 상황을 알리거나 경고하기 위해 차량에 특별히 설계됐더라도 전기 신호를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해 음향을 재생하는 스피커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확성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차량용 음향 신호용 기구	제8512.30-0000호	한·중 FTA 1.6%
확성기	제8518.29-9000호	WTO 양허 0%

전기차 앞 범퍼나 하이브리드 차량 내부에 장착해 가상의 주행음이나 안내음을 재생하는 차량용 음향기기 2종과 품목분류 후보. 심의 결과 확성기로 결정됐다(출처: 관세청)

이에 따라 해당 제품에는 WTO 양허세율 0%가 적용된다. 기존 차량용 음향 신호용 기구로 분류되면 한·중 FTA의 경우 1.6%가 적용돼 이번 위원회 결정에 따라 업계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된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이 엔진 소음이 없는 친환경 자동차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입된 가상 엔진음 장치(AVAS, Acoustic Vehicle Alerting System) 등 신종 자동차부품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수출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차량용 LED 광원 ‘LED 램프(제8539.52-0000호)’로 분류

이번 위원회에서는 자동차 후미등과 제동등 등에 사용되는 차량용 적색 LED 광원 2종의 품목분류도 결정됐다.

심의 과정에서는 해당 제품을 ▲차량용 조명용 기구, ▲차량용 신호용 기구, ▲LED 모듈, ▲LED 램프 중 어느 항목으로 분류할지 검토가 이뤄졌다.



차량용 조명용 기구	제8512.20-1010호	한·중 FTA 1.6%
차량용 신호용 기구	제8512.20-2010호	한·중 FTA 0%
LED 모듈	제8539.51-0000호	한·중 FTA 1.6%
LED 램프	제8539.52-0000호	한·중 FTA 0%

차량용 LED 광원 2종 및 품목분류 후보 심의 결과 LED 램프로 결정됐다(출처: 관세청)

위원회는 해당 제품이 차량 전용으로 제작됐더라도 LED에 전력 공급 및 제어 부품이 결합돼 그 자체가 LED 광원에 해당되는 점을 고려해 HS 제8539.52호 ‘LED 램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끼워서 돌리거나 볼트를 조이는 단순한 방식으로 등화 장치에 쉽게 설치하거나 교체할 수 있도록 캡(cap)이 부착돼 있어 LED 모듈이 아닌 완성형 램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이번 결정은 세계관세기구(WCO)가 2023년 유사 제품을 LED 램프로 분류한 사례와도 부합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업계에서 혼선이 있었던 차량용 조명기구(HS 제8512호), LED 모듈(HS 제8539.51호), LED 램프(HS 제8539.52호) 간 품목분류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위원회를 통해 신기술 제품과 신산업 부품과 관련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활용도 당부했다.

관세청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해 수출입 기업이 신고 전에 품목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며, “올해부터는 수입신고를 마친 뒤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 수정신고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관세법」 개정(2026.1.12.)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물품 및 동일 물품에 대해 결과 통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결과통지 품번으로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부족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기업들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품목분류 관련 분쟁이나 과세 리스크를 사전에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김성은 기자 |

●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

연번	대상물품	결정
1	팥(Frozen Boiled Red Bean)	제0713.32-9000호(WTO 양허 미추천 420.8%)
2	LED LAMP(LR5B)	제8539.52-0000호(한·중 FTA 0%)
3	LED LAMP(RF01)	제8539.52-0000호(한·중 FTA 0%)
4	에뮬레이터(Radio Channel Emulator)	제8543.70-9090호(기본 8%)
5	전기차용 스피커(VESS SPEAKER)	제8518.29-9000호(WTO 양허 0%)
6	하이브리드차용 스피커(CLUSTER SPEAKER)	제9018.19-9000호(WTO 양허 0%)
7	서셉터(ASSY, SUSCEPTOR)	제8486.90-2040호(WTO 양허 0%)
8	기어 조립품(DIFFERENTIAL ASSY)	제8483.40-9090호(간이정액환급 10원)
9	부직포 시트(TYVEK DRAINVENT)	제5603.13-9000호(기본 8%)

출처: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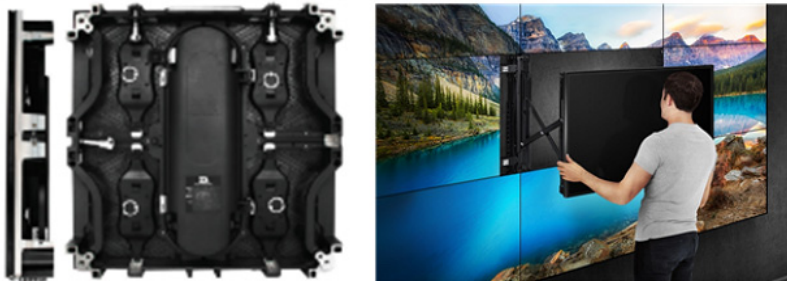
※ 주간 관세무역정보 '위클리뉴스' 코너에서는 관세무역 관련 주요 뉴스를 요약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기사 전문 및 더 자세하고 다양한 관세무역 뉴스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http://www.kctdi.or.kr) > 관세무역동향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CO, “옥외광고용 LED 디스플레이 모듈은 중간재” 무관세 확정

국제 품목분류 논쟁이 있던 옥외광고용 LED 디스플레이 모듈이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무관세 품목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의 잠재적 관세 부담과 통관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옥외광고용 LED 디스플레이 모듈’과 관련해 WCO가 3월 11일(한국 시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제품은 완제품인 ‘모니터(HS 제8528호)’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모듈(HS 제8524호)’로 분류된다. 모니터로 분류될 경우 미국 5%, 유럽연합(EU) 14%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디스플레이 모듈로 분류되면 무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연간 약 120억원 규모의 관세 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수출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목분류 분쟁과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쟁점물품(좌) 및 조립된 모습(우)(사진: 관세청)

이번 품목분류 대상이 된 제품은 건물 외벽 등에 설치되는 옥외광고용 대형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중간재다. LED 디스플레이 패널과 영상신호 수신용 ‘리시빙 카드(receiving card)’로 구성된 모듈 부품으로, 자체적인 영상신호 변환 기능은 없다. 디스플레이 컨트롤러로부터 전달 받은 영상신호를 출력하는 역할만 수행하며, 여러 개의 패널을 조립해 대형 옥외광고판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구조다. 이에 한국정부는 해당 제품이 완제품이 아닌 디스플레이용 중간재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물품을 완제품 모니터로 간주해 관세를 부과하려는 주요국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제75차 WCO 품목분류위원회부터 해당 사안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후 세 차례에 걸친 회의와 논의를 통해 회원국을 설득한 끝에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최종 채택됐다.

재정부는 “이번 WCO 결정은 우리 디스플레이 산업의 기술적 특성과 제품 구조에 대한 이해가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진 사례”라 평가하며, “향후에도 품목분류와 관련한 통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김성은 기자 |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속도 낸다”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이 3월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MOU를 체결한 지 4개월만이다. 정부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과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전략적 투자’는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투자 협력 사업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2,000억달러는 반도체·에너지·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 전략적 산업에 투자하기로 한 대미 투자이며,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 투자, 일명 ‘MASGA 투자’로 구성된다. MASGA 투자는 민간투자뿐 아니라 보증과 선박금융 등을 포함해 미국이 승인한 투자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법안은 전략적 투자 추진 원칙으로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명시했다. 즉 투자 기간 충분한 현금 흐름을 통해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 국익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상업성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동의를 거쳐 투자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은 전략적 투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전략적 투자기금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기관으로 정부출자로 설립된다. 전략적 투자재원을 관리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도 설치된다. 조달된 재원은 대미 투자 사업과 조선업 협력 투자 금융지원 등에 활용된다.

법안에는 투자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경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포함됐다. 먼저 대미 투자 집행이 외환시장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투자 시기와 집행금액을 조정하도록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20년 이내 개별 대미 투자 사업의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현금 흐름의 분배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국내 법령과의 충돌 여부, 한국 기업 참여 확대, 미국정부의 인프라 지원 등 투자 환경 전반을 검토해 협의를 진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특별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법 시행에 앞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위원회를 구성해 공사 설립과 기금 조성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하위법령 마련 작업도 동시에 추진해 제도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 김성은 기자 |

해수부, 요트 수입 시 임시항해검사 원격으로 전환··· 부담 경감

해양수산부는 '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지침'을 마련해 3월 9일부터 원격 방식으로 임시항해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요트 수입 시 시행하는 「산업안전법」에 따른 임시항해검사를 원격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외국에서 중고 요트 등을 구매한 뒤 화물로 반입하지 않고 직접 운항해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임시항해검사를 통해 선박의 안전 여부를 확인받아야 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선박검사원이 현장검사에 입회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진이나 영상, 서면자료, 화상통화 등의 방법으로 검사를 대신 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인접국가인 일본에서 수입되는 무게 20톤 미만, 길이 24미터 미만의 요트를 대상으로 시행한 후 점진적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임시항해검사가 원격으로 진행되면 검사원의 출장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검사 소요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 서준식 기자 |

러시아행 자동차 불법수출 465% 급증··· 관세청 고강도 수사 착수

관세청이 러시아로 향하는 자동차 불법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수사에 착수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수출통제가 강화된 가운데, 제3국을 경유해 자동차를 러시아로 우회수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러시아행 자동차 불법수출은 총 29건, 약 1,796억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2025년 적발 금액은 2024년 대비 4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수출통제 위반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자동차 러시아 불법수출 적발 통계 ●

(단위: 건, 억원)

구분(연도별)	2023		2024		2025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러시아 자동차 불법수출	4	40	13	264	12	1,492

관세청이 적발한 사례를 보면 대부분 러시아 주변국을 경유하는 우회수출 방식이 활용됐다.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 등 제3국을 최종 목적국으로 허위 신고한 뒤 실제로는 러시아로 반입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또한 수출통제 대상인 배기량 2,000cc 초과 차량을 2,000cc 이하의 소형차로 허위 신고하거나, 내수용 신차를 중고차로 둔갑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꾸민 뒤 러시아로 불법수출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자동차 수출통제를 강화해왔다. 2023년 4월에는 5만달러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대러시아 상황허가 대상에 포함했고, 2024년 2월부터는 배기량 2,000cc 초과인 경우

로 변경했다. 상황허가 기준이 금액에서 배기량 기준으로 변경된 것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신설된 무역안보수사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사 과정에서 AI·빅데이터 기반 수출입·화물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수출 위험도가 높은 업체를 선별하고, 산업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 김성은 기자 |

유가 상승 틈탄 '해상 면세유' 불법유출 단속

관세청은 최근 중동 정세로 국제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가능성도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6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부산과 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총 475명이 투입된다. 세관은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해 면세유 불법유출 및 유통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은 국제무역선에 적재돼야 할 선박 연료유 일부를 선박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면세유 불법유출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위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국제무역선 선원과 급유업체 간 담합을 통해 유류를 전부 또는 일부분 적재하지 않는 행위, 선박이나 차량을 이용해 잔존 유류를 부정유출하는 행위, 적재 가능량보다 경유를 과다 적재 신청해 유류를 빼돌리는 행위가 있다. 또한 입항 보고 시 유류탱크 용량을 허위로 기재해 적재 허가를 받은 후 유류를 유출하는 사례와 급유선박 내부에 비밀 저장공간을 만들어 유류를 별도 보관한 뒤 불법유통하는 행위도 중점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관세청은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나 통고처분을 비롯해 조사 부서의 범칙수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김성은 기자 |

한국·스위스 18.5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 갱신

재정경제부는 3월 9일 한국은행과 스위스 중앙은행이 스위스 바젤에서 스위스프랑/원 통화스와프 계약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5년으로 2031년 3월 1일까지 연장됐다. 스위스와의 통화스와프는 2018년 3년 계약으로 처음 체결된 이후 2021년 5년 계약으로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계약 금액은 100억스위스프랑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환산 원화 금액은 환율 변화를 반영해 기존 11조 2,000억원에서 18조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을 적극 추진해왔다. 2025년 2월말 기준 1,482억달러 상당(사전한도가 없는 캐나다 제외)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상태다.

| 서준식 기자 |

미, 한국 포함 16개 교역국 대상 301조 조사 착수… 추가 관세 여부에 주목

제조업 과잉생산을 근거로 조사 개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제조업 분야의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를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EU, 일본, 인도, 베트남, 멕시코, 대만,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등 총 16개 교역 상대국이 포함됐다. 향후 관세 부과 등 통상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국제 통상 환경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3월 11일(현지시간) 미국 USTR은 연방관보를 통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했다. USTR은 각국의 제조업 부문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과잉생산 능력 및 생산 정책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이 미국 산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치인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USTR은 이번 조사가 미국 제조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은 더 이상 다른 국가의 과잉생산 문제를 떠안으면서 자국 산업 기반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조사는 핵심 공급망을 미국으로 되돌리고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미국정부는 다수 교역국이 자국 내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 능력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과잉 공급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과잉생산이 미국 제조업 생산과 투자 확대를 저해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과잉생산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 산업 정책, 시장 왜곡 정책, 강제노동을 통한 생산 등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구미동북아팀 워싱턴DC 무역관은 12일 이와 관련된 ‘글로벌 이슈 모니터링’을 발간하며, “한국 대상으로 전자장비, 자동차·부품, 기계류, 철강, 선박 등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글로벌·대미 무역흑자 증가와 석유화학 부분의 과잉생산 능력 등을 조사 근거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근거 ●

국가	무역흑자	주요 과잉업종	설비 가동률	비고
한국	대세계 흑자 520억달러(2024), 대미 흑자 570억달러(2024)	전자기기, 자동차·부품, 기계류, 철강, 선박	석유화학 부문 감소 필요성 정부 공식 인정	2023년 글로벌 무역 적자에서 2024년 520억달러 흑자로 전환

출처 : KOTRA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 ‘대체 수단’

이번 301조 조사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근거였던 국제경제 비상관한법(IEEPA) 적용을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사실상 무효화한 이후 추진되는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관세(10%)’를 도입한 데 이어 향후 관세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301조 조사 활용 방침을 밝혀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 인상, 수입 제한, 서비스 분야 조치 등 다양한 대응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현지 기자회견에서 글로벌관세 조치가 만료되는 7월 중으로 301조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불합리·차별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 인상, 수입 제한, 무역 합의 체결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 제도다.

정부 “한·미 관세 합의 균형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

산업통상부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해지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STR은 조사 대상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한 상태이며,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어 5월 5일부터 공청회를 개최해 관련 의견을 청취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가 단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특정 산업이나 품목에 대한 관세 조치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301조 조사는 사안별로 추가 조사 개시가 가능해 향후 디지털 규제나 비관세 정책 등 다른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출처: 주간 관세무역정보(사진: CNBC 뉴스 캡처)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장관은 현지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8월까지 미국의 관세가 연방대법원 판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베센트 재무부장관은 “앞으로 몇 달 이내에 무역대표부와 상무부가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 관련 연구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성은 기자 |

시선, 베트남 통관

2025년 8월 11일 또 럽 베트남 당 서기장의 국빈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의 경제협력이 심화되는 가운데, 베트남의 관세·통관 제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근무하는 KOTRA 무역관, 이여람 관세사에게 베트남의 강화된 통상 규제에 관한 실무적 조언을 들었다.

"HS Code만 믿으면 통관 넘어 생산 리스크" 베트남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편 이후 수입 동향과 사례 분석



이여람 | KOTRA 하노이 무역관 FTA 활용센터(관세사)

1. 들어가며

최근 베트남정부는 화학물질법 개정¹⁾과 시행령²⁾을 통해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전면 재설계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의 분산적·사후관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위험도 기반 유형별 통합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점에 있다.

상위 법률 개정 이후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표가 지연되면서 일정 기간 과도기가 존재했으나, 현재는 제도적 틀이 상당 부분 정비된 상태다. 다만 제도 정비가 곧 실무 부담 완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번 개편은 화학물질의 수입·유통 단계 전반에서 사전 검증과 행정 통제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화학물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베트남 주력 제조업의 핵심 원재료다. 따라서 이번 제도 변화는 단순 통관 절차의 변경이 아니라, 베트남에 생산거점을 둔 기업의 공급망 안정성과 직결되는 구조적 규제 변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Law No. 69/2025/QH15

2) Decree No. 24/2026/ND-CP, Decree No. 25/2026/ND-CP, Decree No. 26/2026/ND-CP

2. 제도 전환기와 행정 공백: 기업이 체감한 리스크

상위법 개정 이후 하위 법령 정비가 지연되면서 화학물질 관련 행정절차가 사실상 정지된 시기가 있었다. 이에 2026년 1월 17일,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of Vietnam)는 공문³⁾을 발행해 개정 화학물질법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 완료를 공식화하고, 관계 기관 및 지방정부에 수출입 허가·신고 절차의 신속·투명·일관된 처리를 촉구했다.

같은 날 정부는 Decree No. 26/2026/ND-CP를 포함한 관련 시행령을 공표했고, 산업무역부는 Circular No. 01/2026/TT-BCT 및 Circular No. 02/2026/TT-BCT를 통해 세부 절차를 구체화했다. 이후에 행정 처리는 순차적으로 재개됐으나, 행정 공백 과정에서 보관료 증가, 생산 일정 조정 및 납기 리스크 확대 등의 실질적 부담이 발생했다.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불완전한 법적 근거 하에서 허가를 발급하는 것이 향후 감사·책임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그 결과 '접수 보류'라는 가장 보수적인 선택이 이뤄졌다. 이는 제도의 불명확성보다는, 전환기 집행 기준 미정비에 따른 병목 현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근 발행된 공문 및 공식 지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서명	발행일	주요 내용
Notice No. 363/BCT-HC	2026.1.17.	개정 화학물질법 및 하위법 시행 관련 행정절차 이행 촉구·지침
Decree No. 24/25/26/2026/ND-CP	2026.1.17.	화학물질 관리체계 세분화 및 절차 규정
Circular No. 01/2026/TT-BCT	2026.1.17.	Decree No. 26 기반 화학물질 관리에 사용될 양식 목록 등
Circular No. 02/2026/TT-BCT	2026.1.17.	Decree No. 25 기반 화학물질 사고 예방 및 대응 훈련 실시 관련 규정

3. 부록 명시형 관리체계: 형식적 명확성과 실질적 판단 책임

화학물질법 시행령은 관리 대상 화학물질을 부록(Appendix)에 일반·조건부·특별 관리 대상·화학 사고 예방 및 대응 대상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아울러 베트남 투자법⁴⁾ 부록 II에 따른 금지 화학물질도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과거에는 금지·조건부 중심의 단순 분류체계였다면, 현재는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 관리하는 구조로 재편돼 분류체계의 체계성과 정합성이 한층 강화됐다.

3) Notice No. 363/BCT-HC

4) Law No. 61/2020/QH14

PHỤ LỤC I				
DANH MỤC HOÁ CHẤT CƠ BẢN THUỘC LĨNH VỰC CÔNG NGHIỆP HOÁ CHẤT TRONG ĐIỂM (Kèm theo Nghị định số 24/2026/NĐ-CP ngày 17 tháng 01 năm 2026 của Chính phủ)				
STT	Tên khoa học (danh pháp IUPAC)	Tên chất	Mã số CAS	Công thức hóa học
1.	1,3-Butadiene	1,3-Butadien	106-99-0	C ₄ H ₆
2.	Ethanoic acid	Axit Axetic (GAA)	64-19-7	C ₂ H ₄ O ₂
3.	Acrylonitrile	Acrylonitrile	107-13-1	C ₃ H ₃ N
4.	Ammonia (anhydrous)	Amoniac (khan)	7664-41-7	NH ₃
5.	Argon	Argon	7440-37-1	Ar
6.	Hydrochloric acid	Axit Hydrochloric	7647-01-0	HCl
7.	Nitric acid	Axit nitric	7697-37-2	HNO ₃
8.	Phosphoric acid	Axit photphoric	7664-38-2	H ₃ PO ₄
9.	Sulfuric acid	Axit Sulfuric	7664-93-9	H ₂ SO ₄
10.	Benzene	Benzen	71-43-2	C ₆ H ₆
11.	1-Buten	1-Butene	106-98-9	C ₄ H ₈
12.	Diisocyanate (TDI, MDI, HDI...)	Diisocyanate (TDI, MDI, HDI...)	---	---
13.	Ethanol	Etanol	64-17-5	C ₂ H ₆ O
14.	Ethylene glycol	Ethylene glycol	107-21-1	C ₂ H ₆ O ₂

자료: 화학물질법 시행령 Decree No.24/2026/ND-CP

특히 상업명(trade name)과 부록상 기재 명칭이 상이한 경우가 빈번하므로, 성분 분석표 및 물질안전
전보고자료(SDS, Safety Data Sheet)를 근거해 CAS No.를 기준으로 매칭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결과적으로 분류체계는 명확해졌으며, 판단 책임은 기업 측에 귀속되는 구조다.

4. 사례 분석: EPE 거래의 수입허가 해석

예컨대 시행령 부록 I(일반 화학물질 목록)을 보면, 각 물질은 IUPAC⁵⁾ 명칭, 화학물질명, CAS⁶⁾
No., 화학식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식별·열거된다. 따라서 **베트남으로 화학물질을 수출·수입하는 기업
은 단순히 HS Code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해당 물질의 IUPAC 명칭·CAS No.·화학식·상업
명 간 일치 여부를 교차 검토해 어느 관리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정해야 한다.**

5) 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의 약자로, 화학 분야의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기관. 하나의 화학물질
에 여러 이름이 존재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 기반의 체계적 명명 규칙을 마련했다.

6) Chemical Abstracts Service의 약자로, 화학물질에 고유한 등록번호(CAS No.)를 부여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식별
체계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2026년 2월 9일, 산업무역부 화학국은 EPE⁷⁾ 기업인 A사가 제출한 특별 관리 대상 화학물질 수입 신청 건과 관련해 공문⁸⁾을 통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다. 쟁점은 A사(EPE 기업)가 호치민 소재 B사(일반 기업)로부터 화학물질을 구매하는 거래가 특별관리 대상 화학물질의 수입허가 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였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화학물질법 제12조 제1항은 화학물질의 생산·거래·수입·수출 등이 대외무역관리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돼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대외무역관리법 제56조 제2항은 “국내 시장에서 분리된 관세구역으로 운송되는 물품에는 대외무역관리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또한 상법 제28조 제1항은 수출을 “물품이 베트남 영토 밖으로 반출되거나, 법률상 분리된 관세구역으로 간주되는 특수구역으로 반입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화학국은 본 거래를 일반 기업과 EPE 기업 간의 매매로, 이는 ‘국내 시장에서 분리된 관세구역으로 물품이 이전되는 수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특별관리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수입허가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이 사례는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 화학물질 관리 규제는 대외무역관리체계와 유기적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점
- 거래 구조(EPE 여부, 관세구역 구분)에 따라 허가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제조기업 중 상당수가 EPE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래 상대방의 지위와 관세 구역의 법적 성격에 관한 검토는 실무상 핵심 쟁점이다. 동일한 화학물질이라도 거래 구조에 따라 허가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례는 거래 구조와 관세 구역의 법적 성격이 허가·신고 의무의 범위를 결정하는 복합적 법령 해석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5. 결론

이번 화학물질법 개정을 계기로 제도 전환기에서 나타난 행정 공백과 관련된 실무상 쟁점을 살펴봤다. 베트남 화학물질 규제 개편은 단순한 행정 절차 변화가 아니라 기업의 공급망과 생산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다. 특히 공정 핵심 원재료의 경우 규제 리스크는 곧 생산 리스크로 전이된다. 따라서 베트남 생산기반을 유지하려는 기업은 물질 분류, 거래 구조, 관세구역의 법적 성격을 포함한 사전 검토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7) Export Processing Enterprise의 약자로, 수출가공지역, 산업단지 및 경제특구 내에서 수출가공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Decree No. 35/2022/ND-CP Article 2).

8) Notice No. 239/HC-QLHC

질의 응답 사례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특수통관 / 검역 불합격

통관 과정에서 동물검역(불합격)에 해당된 경우 불합격 사유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검역 대상 물품을 수입통관하려면 검역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역에 합격해야 합니다. 불합격 사유 등 검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검역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화물검역과 동물검역팀 (032-740-2680/2668)]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검역 불합격 물품은 통상 반송 또는 폐기되며, 검역 불합격된 물품 외에 분할 통관을 원할 경우 통관대행 관세사무소 또는 특송업체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 재수출면세

재수출면세는 무상거래만 가능한가요?

「관세법」 제97조의 재수출면세 규정에서는 수입물품의 유·무상 거래 여부에 따라 감면 적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무상과 관계없이 감면주체, 감면용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재수출면세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FTA / RCEP 원산지증명서

자사에서 생산한 물품을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주세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을 원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서는 필요한 서류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는 이를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 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 다. 우편물·택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는 영수증·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계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제12조에 따른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4. 별지 제4호 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해당 물품이 제4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 한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제13조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의 제출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①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세번변경 관련 입증서류[예: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과정명세서, 사용자매뉴얼, 홍보책자 등]
 2.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및 수출물품의 가격관련 입증서류[예: 자재명세서(BOM),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
 3. 규칙 제12조에 따른 원산지(포괄)확인서
 4. 규칙 제13조에 따른 국내제조(포괄)확인서
 5. 그 밖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생산장소·생산과정 등 원산지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
-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재명세서(BOM)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자재명세서를 말한다.

「관세법」상 생산지원비에 관한 판례 해설

김민주 | 부산세관 심사총괄과(쟁송팀)

1. 들어가며

「관세법」상 과세가격의 결정은 수입물품의 실제 거래가치를 반영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제거래의 특성상 실제지급가격 외에도 판매자에게 여러 방식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이 존재할 수 있다. 「관세법」은 이러한 요소들이 거래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이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해 수입물품의 실질적인 거래가치를 충실히 반영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생산지원비다. 구매자가 생산자에게 일정한 물품이나 용역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의 가치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채 완제품의 가격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과세가격 산정의 기초로 삼는다면 수입물품의 실질적인 가치가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다.

이에 「관세법」에서는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해 무상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된 물품 및 용역의 가치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하는, 이른바 ‘생산지원비(Assist)’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생산지원비의 인정 범위 및 산정 방법과 관련해 실무상 다양한 쟁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호에서는 생산지원비의 제도적 취지를 중심으로 관련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고, 생산지원비의 범위 및 과세가격 반영 방식에 관한 해석기준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생산지원비 관련 법령

■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중략> ...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화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 「관세법 시행령」 제18조(무료 또는 인화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것은 제외한다.

■ 「관세법 시행령」 제18조의2(무료 또는 인화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금액의 배분 등)

①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무료 또는 인화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금액(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산정한다)을 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1.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대비 실제 수입된 물품의 비율
2.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이 해당 수입물품 외의 물품 생산과 함께 관련되어 있는 경우 각 생산 물품별 거래가격(해당 수입물품 외의 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합계액 대비 해당 수입물품 거래가격의 비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는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무료 또는 인화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 전액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되는 전체 물품에 관세율이 다른 여러 개의 물품이 혼재된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전액을 관세율이 다른 물품별로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에 안분하여 배분한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무료 또는 인화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① 영 제18조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조립·가공·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

② 영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은 특허기술·노하우 등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술과 새로이 수행하여 얻은 기술로 한다.

③ 영 제18조 각 호의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및 용역을 영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구매

- 자가 공급하는 경우: 그 구입 또는 임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2.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생산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3.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와 영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산출된 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 가. 해당 물품 및 용역의 생산비용
 - 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입 또는 임차한 비용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의장(이하 이 호에서 '기술등'이라 한다)이 수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에 함께 관련된 경우: 당해 기술등이 제공되어 생산된 수입물품에 해당되는 기술등의 금액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생산지원)

- ①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이란 재배, 제조, 채광, 채취, 가공, 조립 등 해당 물품을 만들어 내거나 가치를 창출해내는 행위를 말한다.
- ② 구매자가 영 제18조의 생산지원 물품 및 용역의 생산에 필요한 요소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요소의 비용까지 과세가격에 포함한다.
- ③ 영 제18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산지원 물품에 영 제18조 제4호의 생산지원 용역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국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지원 가격에 포함한다.
- ④ 영 제18조 제2호의 '공구·금형·다이스'에는 수입물품의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종으로 만든 형태의 표본도 포함한다.

3.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생산지원비란

1) 의의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생산지원비(Assist)란,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해 판매자에게 무상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의미한다. 「관세법」에서는 만약 이러한 생산지원비가 과세가격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 이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생산지원비의 범위

「관세법 시행령」 제18조는 생산지원비에 해당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것은 제외한다.

한편, ‘생산’의 의미와 관련해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 제1항에서는 “재배, 제조, 채광, 채취, 가공, 조립 등 해당 물품을 만들어 내거나 가치를 창출해내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의 범위를 특정 공정에 한정하지 않고 물품의 가치를 형성하는 과정 전반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2022년 관세평가분류원에서 개최된 제1회 관세평가협의회에서는, WTO 관세평가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GATT 1994)의 취지에 비추어, 거래가격방법을 가능한 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판매’ 및 ‘생산지원’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기보다는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3) 생산지원비의 산출

「관세법」은 생산지원비의 개념을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산지원물품 또는 생산지원용역의 가격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 산정할 것인지에 관해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각호를 통해 정하고 있다. 이는 생산지원물품의 취득 경로 또는 제공 방식에 따라 그 산정기준을 달리함으로써,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해 실제로 부담한 경제적 비용이 과세가격에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관세법」은 생산지원비의 산정기준을 구매자가 해당물품을 구입해 수입물품의 생산장소에 제공하기까지 실제로 부담한 총비용에 두고 있다. 이는 해당 물품이 무상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되지 않았다면 통상적으로 생산자가 부담했을 비용을 거래가격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도적 취지와도 정합성을 이룬다.

● 생산지원물품에 대한 생산지원비 산출 방법 ●

구매자가 비특수관계자로부터 구입해 제공한 경우	구입비 + 운송비
구매자가 직접 생산해 제공한 경우	생산비 + 운송비
구매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구입해 제공한 경우	제조원가 + 이윤·일반경비 + 운송비

4) WTO 관세평가 협정

WTO 관세평가 협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공정하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산정하기 위해 체결된 다자간 협정으로서,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회원국 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세평가의 국제규범으로 기능하고 있다.

해당 협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원칙적으로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캐나다 등 WTO 가입국 전체가 해당 협정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해당 협정은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가 모두 정본으로서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다언어 조약에 해당하며, 한글 번역은 법적인 효력이 없고 번역 내용이 영문과 다를 경우 영문판을 확인해야 한다.

각 회원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협정에서 정한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도록 자국의 관세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관세법」 제30조 이하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뒤 협정 제1조 내지 제8조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WTO 관세평가협정은 단순한 규정을 넘어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해석 및 적용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할 국제적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관세법」 및 관련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협정의 취지와 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생산지원비 관련 판례 검토

1) 생산지원비 제도의 입법 취지에 관한 법원의 해석

서울고등법원 2016.9.9. 선고 2016누33805판결에서는 생산지원비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는 이유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이와 같이 생산지원비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한 물품이나 용역은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가 금전 이외의 형태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생산자가 구매자로부터 생산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생산자로서는 물품이나 용역을 자기의 계산으로 구매하여 제조 원가에 포함시키는 한편, 이를 구매자에게 대금지급 청구 시 함께 청구하였을 것이어서 결국 생산지원비용을 포함한 가격이 수입물품의 정확한 가격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생산지원비를 가산하라는 제도는, 구매자가 생산자 대신 부담해 제공한 생산요소의 가치를 거래가격에 반영함으로써 수입물품의 가격을 실질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기 위한 규범

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법원은 “생산자가 구매하여야 할 물품을 구매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대신 구입하여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수입물품의 가격을 인하시켜서 결과적으로 관세를 적게 내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려는 이유도 있다고 보인다”라고도 실시했는데, 이는 생산지원비 제도가 단순한 비용귀속의 문제가 아닌, 실질적인 거래가격의 왜곡을 방지하고 과세형평을 확보하는 장치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2) 생산에 투입되지 않은 ‘자체 불량품’에 대한 판단

한편 조세심판원 2015.2.5. 조심2014관0361 결정은, 수입물품의 제조를 위해 원재료를 해외 임가공업자에게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체 불량품의 가액을 생산지원비로 봐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해당 결정에서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쟁점물품 제조를 위한 원자재를 임가공업자에게 보내는 과정 및 보관 중에 발생한 ‘**자체 불량품**’은 **정상적인 생산과정**이 아닌 **부분의 손실량**이므로 생산지원비를 규정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인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과 제3호인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불량품이란 ‘품질이나 상태가 나쁜 물건’을 의미한다. 즉 원재료의 일부가 품질상의 결함 등으로 인해 본래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불량품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불량품은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5. 시사점

이러한 판결 및 결정에서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구매자가 생산과 관련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생산자는 이를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했을 것이고, 그에 소요된 비용은 결국 제조원가에 포함돼 거래가격 형성에 반영됐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구매자가 해당 요소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 그 부담이 금전지급이 아닌 형태로 이전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구매자가 생산을 위해 실제로 부담한 ‘구입 비용’ 전부를 생산지원비로 봐 과세가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제공된 모든 물량이 일률적으로 생산지원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거래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요소까지 포함될 경우, 과세가격이 실제 거래가치를 초과해 산정될 우려가 있다. 예컨대 자체 불량품과 같이, 생산자가 통상적으로 부담해야 할 생산 관련 비용의 일부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생산지원비로 봐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실무상 생산지원비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매자의 제공 행위가 생산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체하는 기능을 수행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거래가격 형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요소까지 과세가격에 반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생산지원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과세가격이 실제 거래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6. 맺음말

생산지원비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특히 구매자의 생산지원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거래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할 때, 일률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실무상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구매자의 생산지원 행위가 실제로 거래가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생산지원된 요소를 무조건 생산지원비에 포함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과세가격이 실제 거래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생산지원비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관련 법령의 취지와 판례의 방향성을 함께 고려해, 거래 당사자 간 생산지원이 거래가격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과 적용이 축적될 때, 생산지원비 제도가 의도하는 바와 같이 과세가격이 실제 거래가치를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제8414호 품목분류 해설 및 주요 쟁점사항 연구

- 공기펌프나 진공펌프·기체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 기밀식 생물안전작업대 -

김 명 섭 | 더컨설팅그룹 THE관세연구원 원장(관세사)

[해설 요지]

제8414호에는 공기 또는 진공펌프, 공기나 기타 가스 압축기 및 송풍기, 팬이 내장된 환기용 또는 재순환용 후드, 밀폐형 생물안전 캐비닛을 포함한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이나 동력구동식의 기계와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를 포함한다.

제8414호는 크게 (A) 공기펌프 또는 진공펌프와 기체압축기, (B) 송풍기(fan), (C)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D)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의 4개의 소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A) 공기펌프 또는 진공펌프와 기체압축기 소그룹의 기기는 공기를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시키거나 밀폐된 용기 내의 공기를 제거해 진공을 형성하고 기체를 높은 압력으로 압축해 저장하거나 공급한다. 보통 피스톤, 다이어프램, 베인, 로터 등의 운동을 통해 기체를 흡입하거나 배출한다.

(B) 송풍기(fan) 그룹의 기기들은 모터와 같은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송풍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킨다.

(C)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 소그룹의 기기에는 가정이나 음식점, 구내식당,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팬을 결합한 요리용 후드와 팬을 결합한 실험실용 후드나 산업용 후드도 포함한다.

(D)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gas-tight biological safety cabinets) 소그룹의 기기는 보통 작업 공간이 기밀(가스-타이트)로 유지되고, 전면 글러브 포트를 통해서 조작하는 형태다. 주로 기밀 챔버, 글러브 포트, 공기 처리시스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호로 분류되는 주요한 기기로는 터보분자 진공펌프, 공기펌프, 피스톤식 기체압축기, 원심식-터보 기체압축기, 휴대용 기체압축기, 가정용 선풍기, 축류 송풍기(fan), 원심 송풍기(fan), 주방용 후드, 실험실용 후드, 산업용 후드, 가스밀폐형 생물학 안전 캐비닛(BSC) Class III 등이 있다.

[주요 쟁점사항]

공기펌프나 진공펌프·기체압축기를 구별하기 위한 제8414호 5단위 소호의 구분 기준을 살펴보면 제8414.1 소호는 품명, 제8414.2 소호는 형식(작동방식), 제8414.3 소호는 용도, 제8414.4 소호는 부속기기+품명, 제8414.8 소호는 잔여(기타)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 기준이 다양하면 중복 분류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제8414.8 잔여 소호로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을 해석하기도 어렵다. 또한 분류에 따른 협정세율의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제8414.5 5단위 소호에 규정한 ‘팬’에 대해 관세청과 관세평가분류원은 ‘실내용’의 범주를 고정 설치나 실내 상시 사용을 전제로 함을 기준으로 삼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팬의 주용도와 물리적 형태(크기, 베이스 안정성, 고정 방식)가 실내 가전 수준임을 암시하며, 손잡이·접이식·휴대 그림이 있는 제품은 제외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휴대용 팬 등은 제8414.59(기타의 팬) 소호로 분류된다.

HS 2022 개정에 따라 제8414호의 용어에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추가됐다. 호의 용어에는 신설됐으나 해설서에는 아직 기밀식 생물안전작업대 소그룹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 이유는 HS 해설서는 호나 소호의 법적 용어를 보충 또는 예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신설 품목에 대해 곧바로 해설이 보강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이다.

동력구동식의 공기 또는 진공펌프나 기체압축기는 모터나 터빈이 결합돼 제시되며 펌프나 압축기에 본질적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나 주 제3호 규정에 따라 제8414호로 분류한다. 다만 본질적으로 터빈의 가격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는 제8414호의 펌프나 압축기로 분류해서는 안되며, 이 경우 별도로 분류하거나 터빈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1. 분류체계

1) 호의 구성

제8414호에는 공기 또는 진공펌프, 공기나 기타 가스 압축기 및 송풍기, 팬이 내장된 환기용 또는 재순환용 후드, 밀폐형 생물안전 캐비닛을 포함한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이나 동력구동식의 기계와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를 포함한다. 다른 기계에 사용하도록 특별한 구조로 돼 있을지라도 공기펌프와 진공펌프·기체압축기·팬 등은 해당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제8414호로 분류한다.

이 호는 크게 (A) 공기펌프 또는 진공펌프와 기체압축기, (B) 송풍기(fan), (C)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D)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까지 4개의 소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A) 공기펌프 또는 진공펌프와 기체압축기 소그룹의 기기는 공기나 기체를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시키거나 밀폐된 용기 내의 공기를 제거해 진공을 형성하며, 기체를 높은 압력으로 압축해 저장하거나 다양한 공정에 공급한다.

공기펌프(Air pump)의 주요 종류로는 공기주입펌프(에어 매트·부력관·수족관용 등), 자동차·자전거 타이어용 컴프레서형 공기펌프가 있다. 진공펌프의 종류로는 로터리 베인펌프, 스크롤 펌프, 피스톤식 진공펌프, 다이어프램 진공펌프 등이 있으며, 이들 펌프는 보통 피스톤, 다이어프램, 베인, 로터 등의 운동을 통해 기체를 흡입하거나 배출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제8413호에 열거한 액체펌프(피스톤식·회전식·원심식과 이젝터식 펌프)와 같은 원리와 유사한 구조다.

특별히 진공을 만드는 특수형의 다음 진공펌프도 이 호로 분류한다.

확산펌프 (diffusion pump)	내부에서 작동유체(보통 저증기압의 오일 또는 특수유체)를 증발시켜 고속 증기 제트(vapour jet)를 만들고, 이 증기 제트가 기체 분자와 충돌 또는 동반 이동해 기체를 아래 쪽 또는 배출구 쪽으로 유도시켜 진공 챔버로부터 기체를 제거하는 비기계식 방식으로 고진공 상태 달성
분자펌프 (molecular pump)	기체 분자(예: 공기, 기타 가스)들이 충돌하기보다는 펌프 내부의 고속 회전 부품이 충돌·운반함으로써 기체분자를 외부로 배출해 초고진공을 형성
게터펌프 (getter pump)	기체를 활성 금속 표면에 화학적으로 결합하거나 물리적으로 흡착·제거해 진공 형성. 증발식과 비증발식이 있음.
크리오펌프 (cryo pump)	매우 낮은 온도의 냉각 표면(보통 <120K)에 기체를 응축(cryocondensation) 또는 저온 흡착(cryosorption)·제거해 진공을 형성
흡착펌프 (sorption pump)	액체질소로 냉각한 다공성 흡착제(활성탄/분자체) 표면에 물질을 흡착해 오일 프리로 초기 배기(러핑)·클린 진공을 형성

공기펌프(Air Pumps)·진공펌프(Vacuum Pumps)는 산업용 진공 형성(반도체 제조, 제약 공정, 연구실 실험 등), 식품 포장용 진공 형성, 의학·연구용 장비의 진공 유지, 수족관·양식장의 산소 공급, 타이어 공기 주입 및 기타 공기 충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기체압축기의 종류로는 스크루(회전) 압축기, 왕복동(피스톤) 압축기, 원심식·터보 압축기, 소형 압축기, 휴대용 공기압축기, 에어브러시용 미니 컴프레서 등이 있으며, 보통 피스톤이나 로터리 기구로 기체를 압축하기도 하고 임펠러가 회전하면서 기체의 속도를 높이고 속도를 압력으로 변환해 기체를 압축한다.

공기나 그 밖의 기체압축기(저압용이나 간헐적으로 작동하는 압축기를 제외한다)는 압축할 때 발생하는 상당한 열을 분산시키기 위한 수냉식 또는 공냉용(표면냉각, air cooling)의 핀이나

그 밖의 장치를 갖추고 있다.

기체압축기는 공장 자동화 설비의 공기압력 시스템(Pneumatic systems), 냉동·에어컨 시스템의 냉매 압축, 자동차 정비 장비(에어건, 스프레이 도장 등), 건설 현장의 공구 작동(에어해머, 에어드릴 등), 가스 압송 및 저장 등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제8414호에는 ‘Free-piston gas generator(크랭크축이 없는 자유 피스톤식 가스발생기)’가 포함된다. 이 기기는 피스톤 왕복운동으로 공기를 압축·연소시켜 고온·고압 가스를 만들고, 이 가스를 가스터빈으로 보내 회전을 얻는 장치다. 쉽게 말해 크랭크축 없이 피스톤의 운동이 연소가스 압력·리바운스(반력) 장치·부하(예: 공기압축, 선단 터빈) 상호작용으로 결정되고, 발생한 고압 배기가스가 터빈을 직접 구동한다. 즉 작동 고압 배기가스를 만드는 장치이므로 제8405호의 가스발생기와 구별된다.

제8413호의 액체펌프의 경우에서와 같이 이 그룹에 해당하는 공기펌프와 기체압축기는 모터나 터빈이 일체 구조로 돼 있는 경우도 있으며, 후자는 주로 다단식 가스터빈의 역원리로 작동하는 고압 가스압축기로 사용한다. 이들은 제16부 주 제3호(복합다기능기계 분류규정)나 제4호(기능단위기계 분류규정)를 적용해 이 호로 분류한다.

(B) 송풍기(fan) 그룹의 기기들은 원동기(integral motors)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송풍하거나 주위 공기에 움직임 을 발생시키도록 설계됐다.

첫 번째 형식의 것은 동체와 도관 내에서 회전하는 프로펠러(propeller)나 블레이드(blade)형의 임펠러(impeller)로 구성돼 있는 축류팬(Axial fan) 종류로 프로펠러처럼 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공기를 이동시킨다. 대유량·저정압에 적합(예: 터널/광산 제트팬, 대형 환기팬)하며, 회전식(rotary)이나 원심(centrifugal)식 압축기의 원리로 작동하는 원심블로워(Centrifugal blower/fan) 종류로 공기를 가운데서 흡입해 임펠러 원심력으로 90도 굽혀 토출하고 비교적 높은 정압이 필요할 때 사용(집진·배관송풍 등)한다.

두 번째 형식의 것은 간단한 구조로 돼 있다. 즉, 외부 배관이나 사례 없이 팬 회전 날개(임펠러 또는 프로펠러)와 모터만 결합돼 있고 자유 공기 중에 회전하며 공기를 이동시키는 형태다.

팬은 실내 환기 및 공조(HVAC), 산업 현장의 공기 순환 및 방열, 전자기기의 냉각(CPU 팬, 전원공급장치 팬 등), 건물의 배기·흡기 시스템, 여러 가지 재료(가죽·종이·방직용 섬유·도료 등)의 건조, 광산 및 노의 환기 및 송풍 등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이 호에는 타워 팬·가정용 선풍기를 포함하며, 각도 조절이나 방향 전환 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은 천장용 팬·탁상용 팬·벽걸이용 팬 및 벽이나 창유리(window panes) 등에

설치하기 위한 원형의 테두리가 있는 팬과 충전식 휴대용 팬을 포함한다.

팬에 원동기(예: 모터 등)나 하우징(housing)이 결합된 것은 이 호로 분류하나 그 외에 다른 요소[대형의 먼지 분리용 콘(cone)과 필터(filter)·냉각이나 가열체와 열교환기 등]가 결합돼 다른 호에 분류될 만큼 복잡한 기계적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 이 호에서 제외한다[예: 전기가열식 이 아닌 에어히터(air heater)(제7322호)·공기조절기(제8415호)·제진기(dust extractor)(제8421호)·재료처리용의 에어쿨러(air cooler)(제8419호)·건물용의 에어쿨러(air cooler)(제8479호)·팬을 내장한 전기식 난방기기(제851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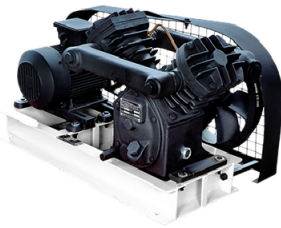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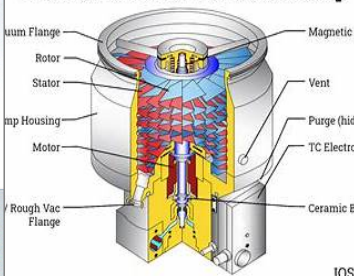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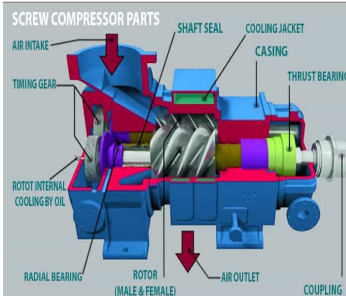
(C)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소그룹의 기기에는 팬을 결합한 요리용 후드(cooker hood)를 포함하며[이들은 가정이나 음식점, 구내식당(canteen), 병원 등에서 사용한다], 팬을 결합한 실험실용 후드나 산업용 후드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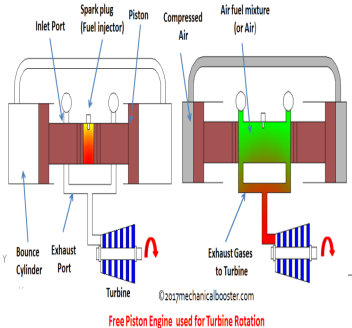
요리용 후드(Cooker hood=range hood)는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증기·기름입자·냄새를 후드와 내장 팬으로 흡입해 외부 배출하거나 실내로 재순환시키는 환기용 후드다. 열원 위를 덮어 오염 공기를 모아주는 덮개 구조의 후드(캐노피) 본체와 팬/블로워, 기름·메시·냄새 등을 거르는 필터, 배기 덕트 등으로 구성돼 있다.

팬을 결합한 실험실용 후드나 산업용 후드는 실험실·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연기·입자를 국소 배기로 포집해 외부로 배출(또는 여과 후 재순환)하는 설비다. 주로 오염원이 발생하는 개구부와 작업면, 내부 배플(baffle)로 흐름을 고르게 하는 후드 본체와 팬/블로워, 포집된 공기를 안전 지점으로 배출하는 덕트/배기 스택(덕트형), 필터, 개폐창(새시, sash)·조명·제어반 등으로 구성돼 있다.

(D)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소그룹의 기기는 ‘가스 차단형 생물안전작업대(gas-tight biological safety cabinets; BSC)’라고도 불리며 보통 작업 공간이 기밀(가스-타이트)로 유지되고 전면 글러브 포트를 통해서 조작하는 형태다. 주로 기밀 챔버, 글러브 포트, 공기 처리시스템 등으로 구성돼 있다.

2) 제8414호의 다양한 기기

수동식(발로 작동) 공기펌프	수동식(손으로 작동) 공기펌프	컴프레서형 공기펌프
		
로터리 베인 진공펌프	스크롤 진공펌프	피스톤식 진공펌프
		
다이아프램 진공펌프	터보 분자 진공펌프 구조	크리오 진공펌프
	Turbomolecular Vacuum Pump 	
스크루 기체압축기 구조	원심식 기체압축기	왕복동 피스톤식 기체압축기
SCREW COMPRESSOR PARTS 		

회전식 기체압축기	휴대용 에어 컴프레서(기체압축기)	에어브러시용 미니 컴프레서
		
프리 피스톤식 제너레이터 구조	축류(axial) 송풍기(fan)	원심(centrifugal) 송풍기(fan)
		
타워형 가정용 선풍기(fan)	일반 가정용 선풍기	모터가 결합된 단순 구동식 팬
		
주방용 후드	산업용 후드	실험실용 후드
		

연기 포집 산업용 후드	고위험 병원체 취급용 글로브박스	생물학 안전캐비닛(BSC) I, II, III
		

3) 제8414 소호의 구성

제8414 소호는 호의 용어에 따른 그룹을 중심으로 종류, 형식, 용도, 부착물 등에 따라 5단위 소호를 9개로 세분화했고, 팬의 경우 용도에 따라 좀 더 세분화해 총 10개의 소호로 세분화했다. 소호의 구분에 대한 문제점은 쟁점사항에서 다룬다.

소호의 용어를 간단히 구별하면 다음과 같다.

- 제8414.10 - 진공펌프
- 제8414.20 - 손이나 발로 작동하는 공기펌프(수동식 펌프)
- 제8414.30 - 냉장·냉동 설비용 기체압축기
- 제8414.40 - 예인용 바퀴달린 새시 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 제8414.5 - 팬
- 제8414.51 - 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용·지붕용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제8414.59 - 기타(충전식 휴대용 팬 등)
- 제8414.60 - 후드(hood)(수평면의 최대 길이가 120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제8414.70 -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BSCs)
- 제8414.80 - 기타(제8414.10, 20, 30, 40, 60 소호에 분류되지 않은 공기펌프와 진공펌프, 기체압축기, 후드)
- 제8414.90 - 부분품

4) 제8414호 HSK의 구성

산업 불균형 조정(예: 항공기용, 반도체 제조용,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과 세관장확인대상(예: 전기용품안전관리) 등을 고려해 소비전력, 용도를 중심으로 세분화했다. 소호의 구분 및 해석에 따라 HSK 분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관련 규정

제8414호의 ‘공기펌프나 진공펌프·기체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 제16부 주 제2호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 제7322호의 용어

철강으로 만든 방열기(중앙난방용으로 한정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동력구동식 송풍기를 갖춘 공기가열기와 온풍배분기(냉풍이나 조절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배분기를 포함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 제8401호의 용어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원자로용 연료 요소(카트리지)와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

■ 제8404호의 용어

제8402호나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 … <후략>

■ 제8405호의 용어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性)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 제8415호의 용어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와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 제8418호의 용어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 제8421호의 용어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 제8424호의 용어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 … <후략>

■ 제8467호의 용어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전동기를 갖추거나 비전기식 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제85류 주 제4호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계식 기기만을 분류한다.

가. 바닥광택기·식품용 그라인더·식품용 믹서·과실주스나 채소주스 추출기(중량에 상관없다)

나. 가목에서 규정한 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

다만, 팬과 팬을 결합한 환기용·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제8414호)]는, … <중략> … 제8509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 제8716호의 용어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

■ 제9012호의 용어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과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

■ 제9018호의 용어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

■ 제9032호의 용어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3. 주요 쟁점사항

제8414호의 분류와 관련해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제8414호 소호 분류체계의 문제점과 제8414.80호(잔여 소호)로 분류 가능한 물품은?
- 2) 제8414.5 소호에 규정하고 있는 팬의 분류는?
- 3) 제8414.70 소호에 규정한 기밀식 생물안전작업대란?
- 4) 고압 기체압축기가 제8414호로 분류되는 이유와 문제점은?
- 4) 제8414호와 경합하는 물품과 세번은?

1) 제8414호 소호 분류체계의 문제점과 제8414.80호(잔여 소호)로 분류 가능한 물품은?

통칙 제6호의 분류에 대해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단위별로 같은 구분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난 품목분류해설[본지 제2159호(2025.12.15.) 참고]에서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다. 물론 호의 용어에 그룹으로 “① 공기펌프나 진공펌프·기체압축기와 팬, ②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③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① 공기펌프나 진공펌프·기체압축기와 팬으로 한정된다. 제8414.5 5단위 소호에 규정한 팬은 5단위에서는 문제가 없고 6단위 소호의 구분이 어려우므로 2) 쟁점사항에서 별도로 다룬다.

① 공기펌프나 진공펌프·기체압축기를 구별하기 위한 제8414호 5단위 소호의 구분 기준을 살펴보면 제8414.1 소호는 품명, 제8414.2 소호는 형식(작동 방식), 제8414.3 소호는 용도, 제8414.4 소호는 부속기기+품명, 제8414.8 소호는 기타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 기준이 다양하면 중복 분류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제8414.8 잔여 소호로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을 해석하기가 어렵다.

제8414호 해설서에도 (A) 펌프와 압축기를 하나의 소그룹으로 묶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더 구분하기 쉽지 않다. 물론 해설서에 특수한 진공펌프를 “확산펌프(diffusion pump)(유동성의 기름이나 수은의 확산용 펌프)·분자펌프(molecular pump)와 인트랩먼트 펌프(entrapment pump)[게터 펌프(getter pump), 크리오 펌프(cryo pump)]와 같이 특별히 진공을 만들기 위한 특수형의 것도 있다”로 해설하고 있으나 진공펌프의 정의(예: 어느 정도까지가 진공인지 여부 등)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제8414.10 소호(진공펌프)와 제8414.20 소호(손이나 발로 작동하는 기체펌프)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6호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다. 다만 공기펌프와 진공펌프의 범위를 살펴보면 진공펌프는 공기펌프의 한 종류로 보이므로 통칙 제3호 가목을 준용해 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제8414.10 소호의 진공펌프가 우선 분류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있다. 다만 손이나 발로 작동한다는 한정이 있다는 점에서 제8414.20 소호가 더 구체적이라는 논리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만일 ‘손이나 발로 작동하는 진공펌프’가 있다면 분류의 논쟁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기체압축기의 경우도 제8414.30호(냉장·냉동 설비용 기체압축기)와 제8414.40호(예인용 바퀴달린 새시 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도 통칙 제6호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다. 또한 통칙 제3호 가목을 준용해 어느 소호가 보다 협의적으로 또는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만일 ‘이동식 냉동차량에 장착된 냉동설비용 기체압축기’가 있다면 이 또한 분류의 논쟁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

* 참고로 ‘예인용 바퀴달린 새시 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란 이동식 펌프나 이동식 압축기가 단순한 새시(chassis)에 장착돼 견인되도록 설계돼 있는 것을 말하며 제8716호의 차량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면 안 된다.

이처럼 소호 제정 시 중복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분 기준이 중요하다. 아직까지 제8414호는 협정세율별로 소호 간 세율차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 보이므로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제8414호 소호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제8414.80 소호로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제8414.10 소호(진공펌프)와 제8414.20 소호(손이나 발로 작동하는 기체펌프)로 분류할 수 없는 쉽게 말해 진공펌프 또는 수지식 펌프가 아닌 기체펌프와 제8414.30호(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와 제8414.40호

(예인용 바퀴달린 새시 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가 아닌 기체압축기, 제8414.60 소호에서 제외되는 후드가 분류된다.

● 제8414.10호 진공펌프의 분류사례 ●

시행기관	2022년 제6회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공개 여부	공개
결정 세번	제8414.10-9020호
경합 세번	제8414.10-9020호, 제8414.10-9090호
품명	Vacuum Pump(Turbo molecular Pump - Ni Oxide Layer)

○ 물품 개요

자기부상 방식의 터보 분자펌프로, 흡입구를 통해 들어온 진공 용기(Chamber) 내의 투입 가스 및 반응물질들을 압축해 배기구를 통해 배출시켜 진공용기 내부를 진공상태로 만듦 (용량: 3800ℓ/s, 도달진공도: 10⁻⁹ torr)

기본 모델인 STP-IXA4506(터보 분자펌프)에 회전자 니켈 코팅과 회전자 산화막 처리를 하고, 니켈 코팅 메시, TMS(온도조절장치, 80℃ 온도 유지)를 추가 장착

용도: 평판디스플레이 건식 식각(Dry Etch) 공정에 사용

물품 설명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 … <후략>’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4.10호에는 ‘진공펌프’를, HSK 제8414.10-9020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이 각각 세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이나 동력구동식의 기계와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A) 펌프와 압축기” 그룹에서 “<전략> … 분자펌프(molecular pumps)와 인트랩먼트 펌프(entrapment pump)[게터 펌프(getter pumps)·크리오 펌프(cryo pumps)]와 같이 특별히 진공을 만들기 위한 특수형의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결정 사유

본건 물품은 진공을 만들기 위한 자기부상 방식의 터보 분자펌프인 ‘진공펌프’이므로 제8414호에 부합하는 물품으로,

본건 물품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사양에 맞게 ‘회전자 니켈 코팅’처리와 ‘회전자 산화막 처리’, ‘니켈 코팅 메시’와 ‘TMS’를 장착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본건 물품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진공펌프’로 분류함이 타당함.

따라서 본건 물품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진공펌프’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10-9020호에 분류함.

2) 제8414.5 소호에 규정하고 있는 팬의 분류는?

제8414.5 5단위 소호에 규정한 팬은 5단위 소호로 분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나 6단위 소호의 분류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제8414.51호[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용·지붕용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6단위 소호의 분류에서 요즘 많이 들고 다니는 충전식 휴대용 팬이 이 소호로 분류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먼저 호 해설서에는 “실내용 팬을 포함하며, 각도 조절이나 방향 전환 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은 천장용 팬·탁상용 팬·벽걸이용 팬 및 벽이나 창유리(window panes) 등에 설치하기 위한 원형의 테두리가 있는 팬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여기서 “천장용 팬·탁상용 팬·벽걸이용 팬 및 벽이나 창유리(window panes) 등에 설치하기 위한 원형의 테두리가 있는 팬”은 실내용 팬을 의미함에는 틀림이 없다. 또한 출력 125와트는 정격출력 125와트를 말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선풍기는 보통 60와트 이하이므로 125와트 이하의 상당한 출력을 가진 것도 실내용 팬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휴대용, USB 전원용, 휴대 및 전원사용이 가능한 팬도 출력 기준은 무조건 충족한다.

관세청과 관세평가분류원의 기준은 ‘실내용’의 범주를 고정 설치나 실내 상시 사용을 전제로 함을 기준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팬의 주용도와 물리적 형태(크기, 베이스 안정성, 고정 방식)가 실내 가전 수준임을 암시하며, 손잡이·접이식·휴대 그림이 있는 제품은 제외됨을 의미한다.

다만 필자의 견해는 ‘팬’이 제85류가 아닌 제84류에 규정된다는 것은 팬이 산업용 또는 공업용으로 개발됐음을 의미한다. 해설서에서 “팬은 특히 광산·모든 종류의 건물·사일로(silo)·선박의 환기용; 먼지·증기·연기·열가스 등의 흡입식의 배기용; 여러 가지 재료(가죽·종이·방직용 섬유·도료 등)의 건조용; 노의 송풍장치용으로 사용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는 점이 뒷받침한다.

이들 팬이 점차 실내용 또는 가전제품화되면서 실내용 팬까지 제84류에 포함하게 됐다. 애초부터 충전식 휴대용 타입의 팬을 제8414호로 분류하기 위한 어떠한 규정이나 해설이 없었다.

규정을 살펴보면 제84류 주 제1호 바목에 “제8509호의 가정용 전기기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5류 주 제4호에 제8509호의 범주에 대해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 바닥광택기·식품용 그라인더·식품용 믹서·과실주스나 채소주스 추출기(중량에 상관없다), 나. 가목에서 규정한 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만을 분류하되, “팬과 팬을 결합한 환기용·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제8414호)]”는 제8509호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규정상 휴대용 팬이 제8414호로 분류됨에는 이의가 없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HSK 제8414.59-3000호를 신설해 세분류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 제8414.5 소호의 팬에 대한 6단위 소호의 결정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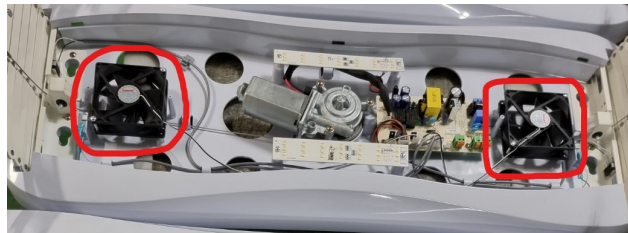
시행기관	2023년 제4회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공개 여부	공개
결정 세번	제8414.59-9000호
경합 세번	제8414.51-9000호, 제8414.59-9000호
품명	DC FAN

○ 물품 개요

세탁물의 습기를 빠르게 건조하기 위해 베란다 천장에 장착(매립)되는 전동식 빨래 건조대에 결합되는 송풍용 팬(fan)으로 팬과 모터가 결합돼 있음.

규격: 크기 92×92×25mm, 소비전력 4.8W(DC 24V, 0.2A)

물품 설명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 ··· <후략>'가 분류되고, 제8414.59호는 '기타의 팬'이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실내용 팬을 포함하며, 경사나 진동 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은 천장용 팬·탁상용 팬·벽걸이용 팬 및 벽이나 창유리(window panes) 등에 설치하기 위한 원형의 테두리가 있는 팬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결정 사유

본건 물품은 전동식 빨래 건조대 내부에 일체로 결합되는 송풍용 팬으로, 빨래 건조대가 천장에 장착되기 때문에 그 안에 결합돼 사용되는 본건 물품도 제8517.51호의 '천장용 팬(ceiling fans)'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보면,

제8414.51호에 분류되는 팬(fans)은 테이블·바닥 등에 놓고 사용하는 선풍기나 천장·벽·창문에 고정해 사용하는 환풍기 등이 분류되는데, 본건 물품은 특정한 기계(전동식 빨래 건조대) 내부에 부분품 형태로 들어가는 팬이므로 결합되는 기계의 위치가 '천장'이라고 해 본건 물품을 '천장용의 팬'으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의 팬'으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59-9000호에 분류함.

시행기관	2022년 제6회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공개 여부	공개
결정 세번	제8414.59-9000호
경합 세번	제8414.51-9000호, 제8414.59-9000호
품명	휴대용 선풍기

○ 물품 개요
전동기가 내장된 충전식 휴대용 선풍기(92×35×118mm), 충전케이블, 넥 스트랩(neck strap)이 소매용 세트로 구성된 물품
물품 특징: 선풍기의 거치대(손잡이) 부분은 안정성을 위해 무게중심을 아래로 두고 바닥 면적이 넓어지는 구조이고 넥 스트랩(neck strap)을 걸 수 있는 고정 고리가 있으며 미끄럼 방지를 위해 실리콘으로 제작
사양: 전력소비 2W, 배터리용량 2,000mAh, 중량 140g

물품 설명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건 물품은 휴대용 선풍기, 충전케이블, 넥 스트랩(neck strap)이 소매용 세트로 된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휴대용 선풍기’에 있으므로 본건 물품은 ‘휴대용 선풍기’가 분류되는 호(heading)에 분류함.

결정 사유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압축기와 팬, … <후략>’이 분류되고, 소호 제8414.51호에 ‘테이블용, 바닥용, 벽용, 창용, 천장용, 지붕용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이, 소호 제8414.59호에는 ‘기타’가 각각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 “(B) 팬(fans):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 … <중략> … 이 호에는 또한 실내용 팬(room fans)을 포함하며, 경사나 진동 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은 천장용 팬·탁상용 팬·벽걸이용 팬·벽 안에 건축할 때 링 모양으로 장착한 팬·윈도우(window) 팬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본건 물품은 제8414.5호의 ‘팬’에 해당함.

본건 물품이 소호 제8414.51호의 ‘테이블용·바닥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본건 물품은 실내외 어디서든 손쉽게 사용하기 위한 ‘휴대용 선풍기’로, 디자인 측면에서 ‘휴대성’이 좋도록 사이즈가 작고 가벼우며, 손으로 잡고 사용할 수 있도록 손잡이(거치대)가 있고, 구성 측면에서도 목에 걸쳐 휴대할 수 있는 ‘넥 스트랩(neck strap)’이 소매포장에 함께 구성되어 있으며, 품명과 카달로그 등에서도 본건 물품을 ‘실내외’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선풍기’로 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 물품은 ‘테이블용·바닥용 팬’으로 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본건 물품은 실내외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선풍기이므로 ‘기타’의 팬으로 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59-9000호에 분류함.

3) 제8414.70 소호에 규정한 기밀식 생물안전작업대란?

HS 2022 버전 개정에 따라 제8414호의 용어에 생소한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추가됐다. 호의 용어에는 신설됐으나 해설서에는 아직 기밀식 생물 안전작업대소그룹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HS 해설서는 호나 소호의 법적 용어를 보충 또는 예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모든 신설 품목에 대해 곧바로 해설서가 보강되는 것은 아니라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된다. 이런 경우는 먼저 WCO의 결정사례와 이 물품이 호의 용어에 반영되기 위한 국제 표준[예: 세계보건기구(WHO)·국제표준화기구(ISO)]을 검토해야 한다.

이에 따른 기밀식 생물안전작업대란 “기체가 새지 않는 밀폐 구조의 생물안전작업대로, 생물학적 위험물질(병원체 등)을 다루는 실험실에서 작업자를 보호하고 오염을 방지하는 장비다. 내부 음압 유지, HEPA 여과, 강제 배기 시스템 등을 위한 강제송풍 장치·배기팬이 필수적으로 포함돼 있다. 이 장비는 고위험병원체, 생화학 병원체 연구, 고독성 독소·에어로졸 실험, 백신·치료제 개발 초기의 고위험 시료 다루기 등에 주로 사용된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기밀식 생물안전작업대는 ‘Biological Safety Cabinet(글로브박스형 BSC)’이라고 불리며, Class I, II, III로 구분된다. Class I 캐비닛은 작업자가 노출될 수 있는 생물위험 물질과 환경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가장 기본 단계의 생물안전캐비닛이며, Class II 캐비닛은 작업자 보호, 환경 보호, 그리고 시료(제품) 보호까지 세 가지 보호(protection for operator, environment, and product)를 모두 고려해 설계된다. Class III 캐비닛은 최고 수준의 격리형(glove-box type) 구조를 가지며, 내부는 가스 밀폐(gas-tight) 형태로 설계돼 있고, 작업자는 글로브 포트를 통해 내부를 조작하도록 설계된다.

Class I, II, III 장비는 내부에 ‘강제 송풍·배기 장치(팬·블로워)’를 갖고 있으며, 이 장비의 핵심 기능이 ‘강제 공기흐름을 통한 보호 기능 제공’이므로 제8414호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 WCO의 ‘층류식 캐비닛’의 분류 사례 ●

품명	층류(層流)식 캐비닛
물품 설명	실험실 등에서 세포배양을 준비하고 취급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포함한 금속 캐비닛으로 구성돼 있다. (i) 공기 정화용 전기팬과 필터가 부착된 공기 재순환 후드 (ii) 후드 밑에서 작업대(work surface)로 쓰이는 천공된 시트 (iii) 옆질러진 액체를 담는 천공시트 밑에 있는 탱크 이 캐비닛은 전면이 열리도록 돼 있고 작업대 또는 테이블에 설치하도록 설계됐다. 이 후드는 층류(層流: laminar airflow)를 일으키는데, 이 층류는 생물학적 시료를 다루는 동안에 조작자를 가능한 모든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캐비닛 열리는 부분에 보호용 장벽을 만들어 준다.
적용 규정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2호 가목, 호의 용어) 및 제6호(제8414.80호)



4) 고압 기체압축기가 제8414호로 분류되는 이유와 문제점은?

HS 관세율표 제8414호 해설서에 “제8413호의 펌프의 경우에서와 같이 이 그룹에 해당하는 기체펌프와 압축기는 모터나 터빈이 일체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후자는 주로 다단식 가스터빈의 역원리로 작동하는 고압압축기로 사용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이 해설을 쉽게 설명하자면, 동력구동식의 공기펌프나 기체압축기는 모터나 터빈이 결합돼 제시되며 공기펌프나 기체압축기에 본질적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나 주 제3호 규정에 따라 제8414호로 분류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기펌프와 기체압축기가 모터가 아닌 터빈과 일체 구조로 돼 있을 경우 무조건 제8414호로 분류하는 것은 곤란해 보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본질적으로 터빈의 가격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는 제8414호의 공기펌프나 기체압축기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다단식 가스터빈의 역원리로 작동하는 고압압축기’의 경우, 압축기(Compressor)는 가스를 여러 단계(impeller 또는 rotor+stator 쌍)로 압축해 고압으로 만드는 장치이므로 제8414호로 분류된다. ‘다단식 가스터빈의 역원리’는 일반적으로 가스터빈에서 압축→연소→팽창(터빈)을 거치는 것과 반대로 압축기를 구동하는 터빈이 동일 팩(패키지)에서 엔진형으로 구성된 경우고, 이는 일반적으로 아주 대형의 고압압축기·압축설비(예컨대 석유화학, 가스플랜트, LNG플랜트 용)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아주 대형의 고압압축기의 경우 터빈보다는 압축기의 가격 비중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8414호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가스터빈 구동형 압축기가 터빈이 핵심이고 설계·제작 난도가 매우 높으며 비용이 압축기 유닛 이상일 가능성 있는 경우에는 터빈으로 분류하든지, 분리해 별도로 분류하는 것을 배제하기 어렵다.

5) 제8414호와 경합하는 물품과 세번은?

제7322호의 용어에 ‘철강으로 만든 방열기(중앙난방용으로 한정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동력구동식 송풍기를 갖춘 공기가열기와 온풍배분기(냉풍이나 조절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배분기를 포함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다.

제7322호의 공기가열기와 온풍배분기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팬은 제7322호(부분품)로 분류하지 않고 제8414호로 분류한다.

제8401호의 용어에 ‘원자로’를 규정하고 있고 제8404호의 용어에 ‘보일러용 부속기기’를 규정하고 있다. 원자로와 보일러는 급격한 온도 상승을 방지하고 냉각시키기 위한 기체펌프와 송풍기가 전용 부분품 또는 부속기기로 필수적으로 사용된다고 할지라도 이들 기체펌프와 송풍기는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제8414호로 분류한다.

제8405호의 용어에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性)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스 터빈용의 프리피스톤식(free-piston) 가스발생기는 가스발생기가 아니라 피스톤 왕복운동으로 공기를 압축·연소시켜 고온·고압 가스를 만들고, 이 가스를 가스터빈으로 보내 회전을 얻는 작동 목적의 기체 발생기이므로 제8414호로 분류한다.

제8415호의 용어에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와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제8418호의 용어에는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 열펌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421호의 용어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규정하고 있다.

공기조절기(에어컨)에 동력구동식 팬이 기본적으로 장착돼 제시됐을 때는 제8415호로 분류하고 동력구동식 팬이 별도로 제시되면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제8414호로 분류하며, 동일한 이유로 냉장고용이나 냉동기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기체압축기라 할지라도 제8414호로 분류한다. 또한 원심식 공기펌프와 송풍기도 역시 제8414호로 분류한다.

제8467호의 용어에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전동기를 갖추거나 비전기식 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수지식 공구에 사용하는 공기압축기가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와 동일한 이유로 제8414호로 분류한다.

제9012호의 용어에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과 회절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현미경과 회절기기에는 특별한 진공펌프가 사용된다. 제9018호의 용어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치과용 기기에는 공기압축기가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제9032호의 용어에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액체나 기체의 유량, 압력, 그 밖의 변량을 조절하기 위한 압축공기식 조절장치가 널리 사용된다.

이 경우 제90류 주 제1호, 제90류 주 제2호 단서 조항에 따라 공기펌프나 진공펌프, 공기압축기가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 제8414호로 분류한다.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차세대 반도체 소재 '탄화규소'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탄화규소(SiC, 실리콘 카바이드)는 규소와 탄소의 화합물로, 다이아몬드에 버금가는 높은 경도, 내열성(1400℃ 이상), 내마모성, 화학적 안전성을 갖춘 고성능 세라믹 재료다. 차세대 화합물 반도체 소재로서 기존 실리콘 대비 고효율·경량화가 가능하다. 이에 전기차, 고전압·고온 산업 기기용 전력 반도체로 주목받고 있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흑회색 불규칙 파쇄상으로 합금철에 해당하는 제7202.21-0000호로 신고했다.

먼저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제72류를 살펴보면, 제7202호는 '합금철(ferro-alloy)'을 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합금철(ferro-alloy)과 선철(銑鐵)의 차이점은 합금철이 상당량의 합금원소[예: 망간·크롬·텅스텐[볼프람(wolfram)]·규소·붕소나 니켈]들의 '용제(solvent)'로서만 작용하는 철을 소량만 함유하고 있다는 점과 탄소의 함유량이 2% 이하라는 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제외규정 (a)에서 "산화몰리브덴(molybdenum oxide), 칼슘몰리브데이트(calcium molybdate), 탄화규소와 또한 규소화칼슘, 규소화망간과 같이 합금철과 동일 목적·동일 방법으로 사용하는 화학 물품(단, 규소화칼슘, 규소화망간의 경우는 철의 함량이 전 중량의 4%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제28류)"을 설명하고 있다.

본 물품은 ▲Si 68.27%, ▲C 21.43%, ▲P 0.041%, ▲S 0.022%, ▲Fe 4.07%의 함량으로 구성됐고, 탄소 함량이 2% 이상이며 Si-C 결정구조를 가진 탄화규소로 제7202호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이다.

제2849호는 '탄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탄화규소(SiC): 전기로에서 탄소와 실리카(silica)를 반응시켜 얻으며 흑색 결정이나 덩어리(lump)나 무정형의 덩어리며 잘게 부서진 모양과 알갱이 모양이 있다. 용융(溶融: fused)이 곤란하고; 화학 시약에 저항력이 있으며; 굴절성이 크고 다이아몬드와 같이 단단하나 부서지기 쉽다. 연마재와 내화(耐火)제품에 사용하며; 흑연과 혼합하여 전기로나 높은 온도 오븐의 내면 도포에 사용한다. 또한 실리콘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직물·종이·판지나 그 밖의 물품의 뒷면에 가루나 알갱이의 형태(제6805호)로 되어 있거나,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 수동숫돌(hand sharpening stone), 연마용스톤(polishing stone) 등의 형태(제6804호)로 되어 있는 탄화

규소는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물품은 불규칙한 과쇄상의 탄화규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849.20-0000호에 정정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CONTAINING BY WEIGHT MORE THAN 55% OF SILICON	7202.21-0000 (A 2%)	Silicon carbide	2849.20-0000 (A 5%)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3월 19일
판매 개시

관세·무역 실무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기준

- ☒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및 FTA 연차세율 반영
 - 24개 FTA(CEPA, SECA 포함), WTO 협정 등 반영
 - 한·UAE CEPA, 한·에콰도르 SECA 신규 수록(미발효)
 - 한·EU, 한·영국 FTA 상·하반기 세율 반영
- ☒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및 간이징액환급률표 개정사항 수록
- ☒ 통합공고 및 기타세율 규정, 내국세법 등 주요 개정사항 반영

도서구매 문의 및 온라인 구매처

Tel : 02)3416-5112 / Fax : 02)3442-2840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www.kctdi.or.kr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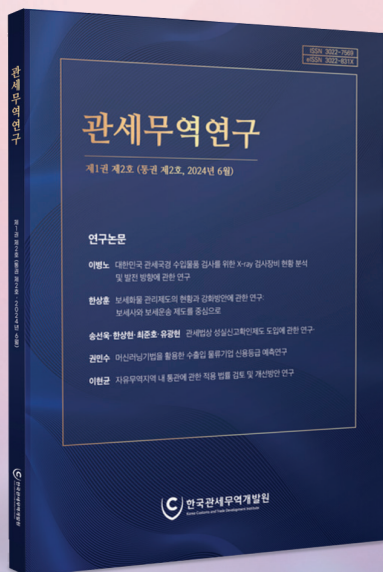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관세 무역 분야 학술·정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

(Korea Customs Review)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 **매년 4회(3·6·9·12월) 발간**
- ✓ **게재 결정된 논문 투고자에게 연구지원금 지급**
-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논문모집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